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꿈나무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5 월 21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[요약정보]</td><td>투자비용
(생략)

<총보수·비용 신설>
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
(생략)

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투자비용
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

<table><tr><th rowspan="2">클래스 종류</th><th colspan="5">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 (연간, %)</th></tr><tr><th>판매 수수료</th><th>총 보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동종유형 총보수</th><th>총보수·비용</th></tr><tr><td>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</td><td>납입금액의 0.6%이내</td><td>1.287</td><td>0.542</td><td>1.38</td><td>1.289</td></tr><tr>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(C1)</td><td>없음</td><td>1.815</td><td>1.070</td><td>1.59</td><td>1.815</td></tr></table>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
(업데이트)

운용전문인력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 부 모집	2.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2.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
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: 해당사항 없음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5 월 21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7.61%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20.54%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

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(제 1 호)[국공채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5 월 21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[요약정보]</td><td>투자비용
(생략)

<총보수·비용 신설>
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
(생략)

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투자비용
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
<table><tr><th rowspan="2">클래스 종류</th><th colspan="5">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 (연간, %)</th></tr><tr><th>판매 수수료</th><th>총 보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동종유형 총보수</th><th>총보수·비용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(제 1 호)[국공채])</td><td>없음</td><td>0.855</td><td>0.650</td><td>-</td><td>0.868</td></tr></table>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
(업데이트)

운용전문인력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 부 모집	2.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2.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
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<신설>	사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: 해당사항 없음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5 월 21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.53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.74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[변경 전 1]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[변경 후 1]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	(생략)	(업데이트)

관한 사항		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[변경 전 1]

(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 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공제제도	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%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한도	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
연금외 수령시 과세 (통상적인 경우)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	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연금외 수령시 과세 (부득이한 경우)	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* 2013 년 2 월 28 일 이전에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,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.

[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해지가산세	5 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.2%
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유	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, 퇴직, 해외이주, 폐업 저축자의 3 개월 이상 치료·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특별중도해지 사유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해지가산세 없음
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	연금소득 5.5%(종합과세 가능)

* '13.1.1~'13.2.28 가입한 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
(단,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.5% 과세)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 후 1]

(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 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 년 이상, 연 1,800 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. 단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

	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 (나이에 따라 변경)
분리과세한도	1,200 만원 (공적연금소득,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
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	・ 천재지변 ・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・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・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・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・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・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으로 3.3 ~ 5.5%(분리과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**펀드명 :** 하나 UBS 지수연계리자드증권투자신탁 SHE-1 호[ELS-파생형]

2. **주요 변경내용 :**
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
3. **효력발생(예정)일 :** 2021 년 05 월 21 일

4. **대비표**

[간이투자설명서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[요약정보]</td><td>투자비용
(생략)

<총보수·비용 신설>

운용전문인력
(생략)
책임 : 김종원
부책임 : 백승엽</td><td>투자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클래스 종류</th><th colspan="6">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 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판매 수수료</th><th>구분</th><th>총 보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동종유형 총보수</th><th>총보수·비용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수수료 선취-오프라인(A)</td><td rowspan="2">납입금액의 0.8% 이내</td><td>최초 6 개월</td><td>0.220</td><td rowspan="2">0.000</td><td rowspan="2">0.91</td><td>0.220</td></tr>
<tr><td>6 개월 경과후</td><td>0.003</td><td>0.003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수수료 선취-온라인(A-E)</td><td rowspan="2">납입금액의 0.5% 이내</td><td>최초 6 개월</td><td>0.220</td><td rowspan="2">0.000</td><td rowspan="2">0.61</td><td>0.220</td></tr>
<tr><td>6 개월 경과후</td><td>0.003</td><td>0.003</td></tr>
</table>

운용전문인력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책임 : 김종원
부책임 : 삭제</td></tr>
</table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5 월 21 일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제 2 부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
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 책임 : 김종원 부책임 : 백승엽	가. 운용전문인력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 책임 : 김종원 부책임 : 삭제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